

형법 개정안 의견서

- 단체명 : 한국여성단체연합
- 대표자 : 김영순, 김민문정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 전화번호 : 02-313-1632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반대(형법 ‘낙태죄’ 조항 완전 삭제)

■ 형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삭제하고 사문화된 ‘낙태죄’를 되살린 개정안으로 정부는 처벌과 허용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형법 ‘낙태죄’를 완전 삭제해야함.

■ 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

- 정부의 형법 개정안 마련 절차상의 문제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66년간 ‘낙태죄’를 인구정치에 활용해 온 국가와는 달리 기본권을 침해당한 그룹의 소송과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들이 만들어낸 반인권적 역사 청산의 기회였음.
 - 하지만, 정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지점인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기위한 절차는 없었음.
 - 수정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하였음.
 -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실질적인 생명보호가 아니라 또다시 생명과 여성의

안위를 분리시켜버린 퇴행적 안임.

- ‘낙태죄’ 존치로는 임신중지를 줄일 수 없으며 태아의 생명보호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효과는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음.

※ 임신주수나 사유제한이 없는 캐나다의 경우 우려와는 달리 비범죄화 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줄어들었음. WHO(국제보건기구)와 FIGO(세계산부인과학회) 역시 비범죄화는 임신중지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모성사망율을 감소시킨다고 밝힌바 있음.

○ 여성의 기본권(자기결정권, 재생산건강권, 평등권)침해

- 임신중지라는 여성의 결정을 전인적인 결정으로 존중하지 않고 다시 허용과 처벌의 프레임에 넣어 여성을 기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 임신의 유지 및 중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있고 후기 임신중지일수록 타인에게 설명하기 힘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24주 이상은 금지, 24주 이내에는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연시켜 오히려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임신중지를 재생산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형벌로써 처벌하겠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여성차별로 폐기되어야 함.

○ 불명확한 처벌기준

- 불명확한 주수를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적임.
- 초음파 검사도 추정치일뿐이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생리주기를 바탕으로 한 주수는 처벌의 요건이 아니라 의료행위 시 참고사항이 되어야 함.

○ ‘낙태죄’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에 대한 시대착오적 판단

- 2000년대 중반부터 유엔 조약기구들의 완전비범죄화 권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정부는 이미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여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을 보호하며, 성과 재생산건강 서비스가 모두에게 가용하고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권고를 받았으며 이 요청에 답할 의무가 있음.

- 최근 개정 중인 외국 입법례는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건강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서 접근하고 있음에도 정부 개정안은 외국의 법 현실과 현재 논쟁 중인 지점에 대한 검토 없이 통제중심 법 조항만 참고한 문제가 있음.

※ 프랑스는 2016년 숙려기간 제도를 폐지했고 올해 9월 하원은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에 따른 임신중지를 임신 기간 내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4월 미국 버지니아주 '재생산건강보호법안'에서는 기존의 24시간 강제대기와 주 정부 기반의 상담의무 등을 폐지하였음.